
2023년도 문화다양성확산사업 (구. 무지개다리사업) 주관기관 공모

2023. 3.

목 차

I. 문화다양성확산사업 안내	1
II. 2023년도 주관기관 공모 상세안내	3
III. 지원심의	11
IV. 신청방법 및 추진일정	13
V. 공통 안내사항	14

I. 문화다양성확산사업 안내

□ 사업안내

-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 구성원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확산함으로써 타문화에 대한 포용과 공동체 통합을 도모하고자 「문화다양성법」(2014년 제정)에 따른 ‘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’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<문화다양성확산사업(구. 무지개다리사업)>은 ‘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’ 정책을 대표하는 사업이며,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.

※ 사업명 변경 안내(무지개다리사업→문화다양성확산사업)

2021년까지는 <무지개다리사업>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으나 사업의 내용을 보다 직관적이고 명료하게 전달하고자 2022년도부터 <문화다양성확산사업>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.

- <문화다양성확산사업>은 국적·인종·언어·지역·성별·세대·계층·소수성(장애유무 등) 등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차이로부터 발생·형성될 수 있는 각각의 고유문화, 언어문화, 지역문화, 세대문화, 소수문화 등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,
- 창조성에 기인한 ‘문화적 표현의 다양성’의 관점에서 각 지역이 지닌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문화의 폭과 깊이를 넓혀 나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위원회는 <문화다양성확산사업>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따른 문화다양성 자원을 발굴하는 한편,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 주체들 간의 상호교류와 소통 증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
※ 문화다양성의 정의

○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(제4조)

-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함. 이러한 표현들은 집단 및 사회의 내부 또는 집단 및 사회 상호 간에 전승됨
-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문화유산을 표현하고, 풍요롭게 하며,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방식뿐 아니라, 그 방법과 기술이 무엇이든지 간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 창조, 생산, 보급, 배포 및 향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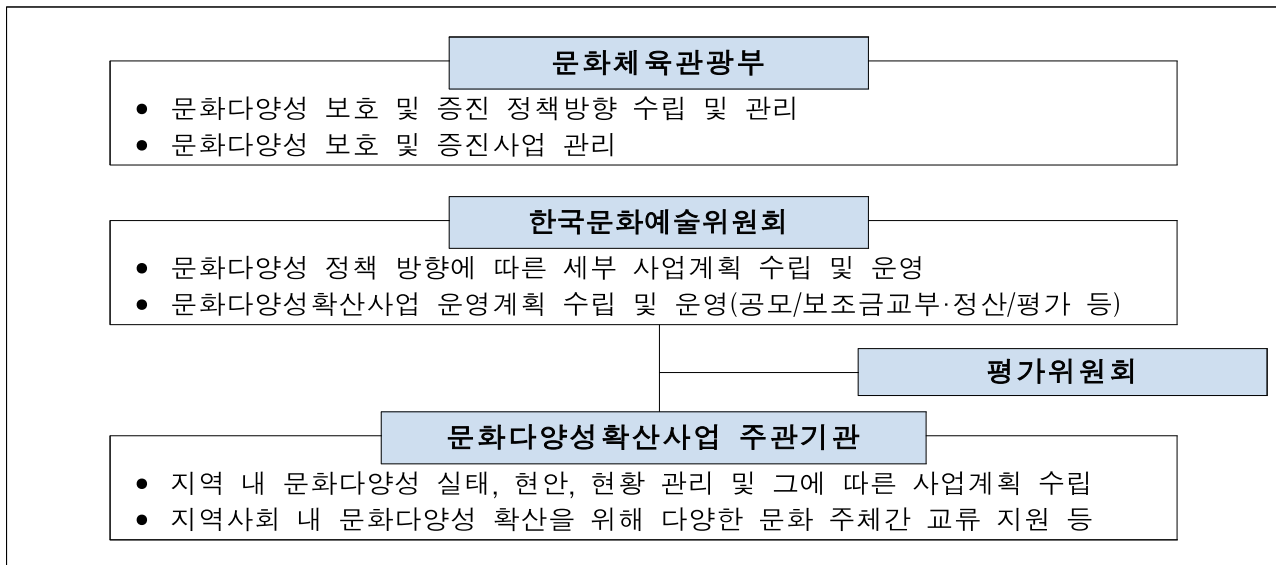
○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(제2조)

- 집단과 사회의 문화*가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,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, 진흥,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, 생산, 보급, 유통,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
 - * 문화란 문화예술, 생활양식, 공동체적 삶의 방식, 가치 체계,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·물질적·지적·감성적 특성의 총체(문화기본법 제3조)
-

□ 사업개요

- (사업명) 문화다양성확산사업(구. 무지개다리사업)
- (사업기간) 2023년 3월 ~ 2024년 12월(2년 연속지원)
 - ※ 단, 사업평가결과 최하등급 기관은 2년 차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, 2024년도 예산반영에 따라 국고 보조금 지원액이 변경될 수 있음
- (사업운영)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
- (사업예산) 1,600,000,000원(민간경상보조)
- (신청대상) 지자체 출자·출연 문화재단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문화예술유관기관
- (지원내용) 문화다양성확산사업 사업비(국고보조금), 관계자 대상 교육 및 워크숍 등
- (지원규모) 20개 내외 선정(기관 당 2천만 원 ~ 최대 1억 5천만 원)

□ 사업추진체계



□ 기관 규모(광역·기초단위)에 따른 주관기관의 역할 권고

- 기관 규모(광역·기초단위)에 따른 역할 구분 및 분리 공모 제안과 각 지역의 상황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의 역할을 구분하여 권고함

<광역단위(시도) 기관>		<기초단위(시군구) 기관>	
역할	지역거점기관으로 정책사업 및 관계자 대상 교육·교류 간접 운영	역할	대민 접점 기관으로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직접 운영
예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관지역 내 기초재단 및 유관기관 대상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 ○ 지역 내 문화다양성 정책기반 마련을 위한 각종 위원회, 리운드테이블, 포럼 등 운영 ○ 타 지역과의 교류 및 협력 지원 등 	예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 특화 문화다양성 현안 및 주제에 맞춘 대민사업 운영 ○ 다양한 문화주체 및 문화기반시설·예술가·예술단체 연계 프로그램 운영 ○ 지역민 대상 문화다양성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

II. 2023년도 주관기관 공모 상세안내

□ 주요 개선사항

○ 개선사항 요약 총괄표

구분	2020~2022년(3년 연속지원)	2023~2024년(2년 연속지원)		
사업명	무지개다리사업	문화다양성확산사업		
지원규모	지원규모 및 내용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		준비 단계	광역 3천만 원, 기초 2천만 원
	구분	결정금액	심화 단계	5천만 원, 8천만 원
	평가 하위기관	4천만 원		
	평가 중간기관	6천만 원		
	평가 중상기관	8천만 원		
평가 우수기관	1억 원	확산 단계	1억 원, 1억 5천만 원	
지원기간	3년 연속지원		2년 연속지원	
평가	사업평가 결과로 익년도 지원규모 결정		사업평가 결과로 2년차 지원여부 결정	

○ 2023-2024년(2년간) 연속지원 사업 체계 구축

-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2년(2023-2024년)간 연속지원
- 중기계획 수립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주관기관이 각 지역의 상황과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
- 단, 사업평가를 통해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 대비 사업 추진실적이 미비한 경우,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

○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특화 지원 강화

- 각 지역의 지리적·인구적·문화적·유산적 특성이 반영된 사업이 기획·운영될 수 있도록 주관기관 선정 및 성과평가 심의가중치 내 ‘지역특화성’ 항목 신설
- 지역특화성은 지역의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등을 통한 발굴 권고

○ 각 지역 및 주관기관의 역량에 따른 맞춤형·단계별 지원체계 마련

- (준비단계) 본격적인 사업운영에 앞서 각 지역의 문화다양성 현안과 실태 연구조사를 위한 준비단계 신설(2년간 광역단위 3천만원, 기초단위 2천만원 지원)
 - (1년차)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다양성 현안과 문화다양성 주제·주체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조사 지원
 - (2년차) 1년차에 진행한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또는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사업 1개 내외를 시범운영
- (심화단계) <문화다양성확산사업>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3개 내외의 핵심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
- (확산단계) 최근 3년 이내 <문화다양성확산사업>에 참여한 이력 있는 주관기관을 대상

으로 기발굴한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다양성 주제에 기반하여 사업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, 5개 내외의 핵심 프로그램을 중점 추진하는 것을 권고

○ 책임 있는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액지원제 도입

- 기존의 사업평가 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액 확정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을 최소화하고, 주관기관의 책임 있는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을 위해 정액지원제 도입
- 지원기관은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단계(준비/확산/심화)와 사업비 규모(2천만원/3천만원/5천만원/8천만원/1억원/1억5천만원)를 선택하여 지원하고, 이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함
- 이를 초과하는 예산은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(의무자부담 비율 10% 포함)
- 단, 부득이하게 불용액 또는 초과분이 발생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 합의에 따라, 일부 기관에 대해 지원신청금액을 조정 제안할 수 있음
- ※ 지원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(안) 및 예산(안)에 대한 변경과정 없이 사업비(국고보조금)을 교부하므로, 책임운영 및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권고(단, 천재지변·사회재난 등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가능)

○ 단위사업 수요를 고려한 국고보조금 지원액 상향

- 주관기관의 사업 추진기반 및 역할에 따른 단위사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액을 최대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

□ 지원신청 안내

1. 신청자격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지역 문화재단
- 문화예술 유관기관 중, 지방자치단체의 투자·출자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·운영되거나,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문화예술관련 업무를 위·수탁받아 운영하는 기관(단, 이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협약서 등 제출 필수)

※ 지원기관의 신청자격요건도 심의대상임

<p>※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주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교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• 언론사와 방송사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• 공공이 아닌 일반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• 중앙정부 및 그에 속한 공공기관 등
--

2. 사업내용

가. 지원규모 및 신청대상

구분	지원규모		선정규모	신청대상 및 지원내용
준비 단계	광역	3천만 원	5-6개 내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신청대상) 신규 및 기존지원기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신규) <문화다양성확산사업> 참여 이력이 없는 신규 주관기관 - (기존) <문화다양성확산사업> 참여 이력은 있으나, 기초연구조사 등이 없거나 전면적 사업개선을 필요로 하는 주관기관 ○ (지원내용) 연구조사 및 시범사업 운영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1년차) 문화다양성 주제 발굴 및 실태조사·연구 1건 진행 - (2년차) 1년차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1개 내외 추진
	기초	2천만 원		
심화 단계	5천만 원		10-12개 내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신청대상) 신규 및 기존지원기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기존) <문화다양성확산사업> 참여 이력이 있는 주관기관 - (신규) <문화다양성확산사업> 참여 이력은 없으나 자체적으로 지역 내 문화다양성 실태, 현황, 현안 조사 등을 마친 신규 주관기관 ※ 단, 이 경우 관련 연구보고서 제출 필수 ○ (지원내용) 핵심 프로그램 3개 내외 역점 추진
	8천만 원			
확산 단계	1억 원		5-6개 내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신청대상) 2020-2022년도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주관기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문화다양성확산사업> 운영 경험 및 역량이 검증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의 수월성을 심화·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○ (지원내용) 핵심 프로그램 5개 내외 역점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확산단계에 선정된 주관기관은 *우수사업 모델화 참여 필수 * 우수프로그램을 매뉴얼화 하여 준비·심화단계의 주관기관 및 타 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사업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활동으로 추후 안내
	1억 5천만 원			

※ 문화다양성확산사업 참여 이력은 구.무지개다리사업을 포함함

※ 신청현황에 따라 단계별 주관기관 선정규모(선정 수)는 변경될 수 있음

※ 본 사업은 정액지원을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하게 불용액 또는 초과분이 발생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 합의에 따라, 일부 기관에 한하여 지원신청금액을 조정 제안할 수 있음

나. 지원내용

1)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추진목적과 유형에 맞는 지역 특화사업 운영지원

○ 추진목적

추진목적	내용
상호교류	2개 이상의 문화주체 간 교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
인식 및 가치 확산	문화다양성 인식 및 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
기반마련	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인적·물적 기반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
문화권보장	소수문화주체의 문화권(창작/표현/생산/보급/유통/향유방식 등)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

○ 사업주제

구분	내용
문화다양성	문화다양성 개념과 내용 전반을 주제로 함 예) 개념, 이론, 국내외 사례, 정책(법률, 조약, 협약, 조례 등), 사업 등
문화정체성	인권존중 측면의 문화적 정체성에 기인한 주제를 다룸 예) 국적, 인종, 종교, 지역, 세대, 성별, 지역, 장애 등
문화적 표현	문화적 예외측면의 창조성에 기인한 문화적 표현을 다룸 예) 언어, 문화예술(문학, 미술, 음악, 공연, 영화 등), 전통 등

○ 참여대상

구분	내용
소수주체	사업의 취지(주제) 및 대상 측면에서 소수주체(통상적으로 장애인, 어린이, 이주배경 주민 등)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경우
대국민	소수주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업의 취지(주제) 및 대상 측면에서 다수주체(통상적으로 지역민, 일반성인 등)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
복합주체	소수주체외 대국민 등 2개 이상의 문화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

○ 활동유형(수단)

유형(수단)	내용	세부유형
교육	일반 국민 또는 핵심매개인력,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 활동	강의, 세미나, 체험프로그램, 학교연계프로그램 등
홍보 및 캠페인	각종 매체 등을 활용한 문화다양성 홍보 및 캠페인 활동	광고 제작, 미디어 캠페인 및 콘텐츠 제작(라디오, 팟캐스트, 영상, 음악, 웹진, 웹툰, 글, 공연, 전시, 방송, 도서, 영화 등) 등
행사	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하는 축제 등 대중이 참여하는 행사성 활동	축제, 공모전, 경연대회, 공연, 전시, 체험 프로그램, 포럼, 컨퍼런스, 워크숍 등
조사연구	문화다양성 관련 연구 및 조사, 결과의 보급 등의 활동	기초조사, 실태조사, 개선방안조사, 연구모임, 매뉴얼 제작, 사례집 제작, 워킹그룹운영, 라운드테이블, 리서치 지원 등
정책활동	문화다양성 관련 정책활동(입법/조례, 기획, 실행, 관리, 평가)을 위한 조직 구성·운영, 회의 등의 활동	위원회, 협의회, 모니터링단, 민관협동조직, 자문단, 컨퍼런스, 워크숍, 라운드테이블 등
문화예술 활동	다양한 문화 주체들의 문화권 보장 및 교류·소통 활동의 매개가 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	문학, 시각예술, 영상, 음악, 공연, 전통 등 문화예술 활동기반
기타	기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활동	기타

※ 사업 및 프로그램별 목적과 유형, 결과물의 중복성 여부도 지원심의 대상임

※ 지원대상 제외사업

-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추진목적과 활동유형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
-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 등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지원사업과 유사·중복 사업
 - *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문화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 지원사업
 - * 기존 예술창작지원사업, 향유지원사업, 장애예술활동지원사업, 복지사업 등과 유사·중복되는 사업
-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업
- 지원받은 보조금을 다른 개인·단체에게 재교부하는 사업
- 단체의 신규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
- 시설의 건립 및 매입, 재건축 사업, 기금 적립 및 용자 지원사업 등
-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지원내용에 맞지 않는 부적합 사업 등

2) 매년 문화다양성의 날 및 문화다양성 주간 프로그램 운영 지원(운영의무)

- 「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의 날(매년 5월 21일) 및 문화다양성 주간(5월 21일~5월 27일)을 위한 프로그램 1개 내외 운영
 - ※ 문화다양성 아카이브(CDA.or.kr) 자료실에서 연도별 ‘문화다양성 주간 백서’를 통해 역대 주관기관 프로그램 확인 가능
- 단, 준비단계 1년차(연구조사) 주관기관은 문화다양성 날 및 주간행사는 운영하지 않지만,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(개막식, 포럼, 강연 등)에 필수적으로 참여하거나 타 기관 모니터링 진행을 필수로 하며, 2년차 시범사업은 문화다양성 주간에 참여하는 것을 권고함

3) 주관기관 관계자 대상 교육 및 워크숍 등 지원(참여필수)

- 주관기관 관계자(실무자, 책임자 등) 대상 정산 등 행정실무 교육 외 문화다양성 개념 및 사례교육 등 지원
- 주관기관 관계자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워크숍 및 각종 행사 지원
-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확산단계 선정된 기관 관계자는 각 기관의 대표 프로그램을 규모별·유형별로 모델화하는 워크숍(연 3회 내외) 참여 및 결과물 제출 필수 (활동비 별도 지원예정)
- ※ 기관 자체예산에 교육 및 워크숍 참여를 위한 여비가 없을 경우, 보조금 내 적정 여비 편성 필수 (오리엔테이션, 워크숍, 교육, 평가, 모니터링 등 참석을 위해 최소 6회 기준 참석 여비 편성 권고)

다. 사업 추진사례

1) (상호교류 지원)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문화다양성 교류 지원

- 지역의 다양한 문화주체들 간 공감대 형성과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적 경험 제공(교육·행사·워크숍 등)
 - (예시) 학교 연계 문화다양성 교육 및 캠프, 작가와의 만남 등
 - (예시) 세대공감 합창단, 영호남청년활동단, 무장애독서모임 등
 - (예시) 지역어(사투리) 사전 제작을 위한 모임 운영 등

2) (인식 및 가치확산) 문화다양성 가치 이해 및 인식 확산

- 대국민 또는 지역민의 문화다양성 가치 이해를 제고하고 확산하기 위한 활동
 - (예시)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연극제, 디아스포라영화제 등
 - (예시) 문화다양성 그림·도서전, 문화다양성 관련 콘텐츠(영상, 이미지, 자료집 등) 제작 및 배포, 문화다양성 영상공모전, 문화다양성 인증제(공간·콘텐츠) 등

3) (기반마련) 지역 정책기반 형성

- 문화다양성 정책 기반 마련 및 활성화를 위한 활동
 - (예시) 문화다양성 실태·현황·기초조사 등 연구형 활동
 - (예시) 주민 참여 정책토론회, 민-관 협의체, 협력네트워크 등 참여형 활동
 - (예시) 문화다양성위원회(또는 준비위원회), 전문가라운드테이블 등 정책 활동

4) (문화권 보장) 소수자의 문화적 표현기회 확대 및 문화권 보장

- 지역별 특성에 따른 문화취약계층 발굴(국내·외 이주민, 장애인, 귀촌인, 중장년 세대, 어린이·청소년 등) 및 문화적 표현기회 제공
 - ※ 본 공고문 7쪽 상단의 기존 창작·단체지원사업과의 중복성 여부도 함께 검토 진행함
 - (예시) 이주민과 함께 하는 고려인 오케스트라, 이주민 라디오 방송 등
 - (예시) 소수문화주체와 함께 하는 장애인 가족연극창작, 세대공감 합창단, 어린이 문화다양성 공모전 운영 등

라. 사업비(국고보조금) 내 편성 가능 예산 항목

- 아래 내용은 사업비(국고보조금) 내 편성 가능 예산 항목에 대한 예시와 안내 요약으로 유의사항 및 주관기관 의무이행 협약서 내 관련 사항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향후 관련 제재 조치 및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
- 심의 확정 이후, 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 절차가 없이 교부되므로 현실적이고 타당한 예산편성 필요(집행지침 및 세목 등 미준수, 적격증빙 등의 부족으로 불인정된 금액은 전액 환수 대상이므로 주의 요망)
- 편성 가능 예산 항목(요약)

비목	세목	항목	비고
인건비	기타직보수	○ 사업추진 전담인력 인건비 - 각종 수당, 4대 보험료 등	○ 보조금 내 인건비 편성 시, 보조금 총액의 20%이내 책정 가능(단, 준비단계 사업의 경우, 보조금 내 인건비 편성 불가)
	상용임금		
	일용임금	○ 단기보조인력(파트타임어) 인건비	○ 유의사항 및 의무사항 내 인건비 편성관련 사항 확인 필수
운영비	일반 수용비	○ 사례비 - 자문·교육 등 전문가 활용 사례비 - 프로그램 참여자·스태프 등 사례비	○ 자산취득성 및 공사성 비용 등의 배리어프리 환경조성비는 보조금 내 편성 불가(단, 자부담 내 편성 가능)

비목	세목	항목	비고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종 제작 및 인쇄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영상, 음원 등 콘텐츠 제작비 - 홍보물 디자인 및 인쇄비 ○ 무장애·배리어프리 운영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어통역비, 점자제작 추가 등 ○ 각종 수수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모성 물품 구입비 - 회계검증 수수료 - 각종 보험 수수료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례비 지급 등에 관한 내부 규정 준용 필수. 내부규정 없을 시,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련 규정 준수 ○ 적격 회계·세무증빙이 없을 경우, 집행 불인정되므로 유의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유번호증 단체와의 거래 - 면세사업자와의 과세 거래 - 과세사업자와의 면세거래 등
	공공요금 및 제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편요금(우체국에 한함) ○ 보험 수수료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편성하고자 하는 금액이 10만 원 단위 미만일 경우, 일반수용비 내 수수료로 편성 및 집행권고
	임차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비, 물품 등의 임차비용 ○ 행사장소 대관료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적격 회계·세무증빙이 없을 경우, 집행 불인정되므로 유의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유번호증 단체와의 거래 - 면세사업자와의 과세 거래 - 과세사업자와의 면세거래 등
	일반용역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행사 운영, 영상 제작 등 용역 대금 ○ 조사, 연구 등에 대한 용역 대금 	
여비	국내여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 추진관련 여비 * 최소 6회 이상 서울 및 기타 지역 내 워크숍 교육 참여 비용 편성 권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단 자체규정을 우선 준용하며, 없을 시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○ 관련 목적 외 집행 시, 불인정
업무추진비	사업추진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관련 회의진행비, 간담회비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추진비는 보조금 총액의 최대 5%까지 편성 가능(단, 사업 특성상, 5%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, 신청서 내 사유를 기재하여 심의 요청 필요) ○ 일반수용비 내 다과비 등을 편성 및 집행하는 유용성 행위를 금함

※ 준비단계 신청사업의 경우, 1차년도는 연구진행을 목적으로 하는 ‘일반수용비’ 또는 ‘일반용역비’만 편성 가능(단, 2년차부터는 프로그램 운영성 비용 편성가능)

마.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

-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,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,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,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
- 총사업비 내 자부담 10% 편성 및 우선집행 등 자부담금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부담은 사업시작일까지 확보 및 편성해야 함(자부담 미확보 및 미집행 시, 차기년도 지원취소 및 기 집행내역 전액 환수조치 예정)
-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의 최대 20%까지 편성 가능하며, 준비단계 선정기관은 보조금 내 인건비를 편성할 수 없음
- 문화다양성확산사업 보조금에서 100% 인건비가 지급되는 전담인력에게 기관의 타 업무를 위탁할 수 없으며, 관련 내용 적발 시 지원중단 및 보조금 전액 환수조치 함

- 사업추진비는 보조금 지원 총액의 5%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음(단,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 편성이 필요한 경우, 사업계획서 내 해당 사유를 기재하고 심의위원회 승인을 득하여야 함)
- 보조금 내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(단,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한 경우 자부담금으로 편성하여야 함)
- 본 사업은 보조사업 정산과 관련하여 전문 회계법인을 지정하여 회계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회계검사수수료를 보조금(또는 자부담 내) 필수 편성해야 함
 - 회계검증대상금액은 자부담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 규모로 산출함
 - * 예) 보조금 2천만 원 + 자부담 5백만 원 사업의 경우, 회계검증 대상 금액은 2천5백만 원
 - 2023년도 회계검증수수료 단가 가이드 라인(부가가치세 포함, 단위 : 원)

사업규모	수수료
1천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미만	302,000
3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	360,000
4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	390,000
5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미만	541,000
6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	586,000
7천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	631,000
8천만 원 이상 9천만 원 미만	676,000
9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	722,000
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	908,000

Ⅲ. 지원심의

1. 준비단계

- (심의위원회)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심의위원회 구성
- (심의절차) 1차 서류심의 > 2차 인터뷰심의

구분	심의내용
1차 서류심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심의목적) 2차 인터뷰 심의대상자 선정 • (심의방법) 서류심의 • (심의내용) 제출서류 기반으로 자격요건 및 내용 등 심의기준에 따른 평가 • (채점방식) 심의위원 개별 채점 • (선정내용) 평균 85점 이상인 기관을 2차 심의대상자로 선정 • (결과발표) 개별연락
2차 인터뷰심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심의목적) 주관기관 선정(보조금 지원규모 확정) • (심의방법) 심층인터뷰(10분) * 신청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• (심의내용) 발표 및 질의응답 내용을 포함하여 심의기준에 따른 평가 • (채점방식) 지원적격성 가/부 평가 • (선정내용) 심의위원 전원이 '가'로 평가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• (결과발표)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공지

※ 준비단계 신청기관의 경우, PT 발표는 제외하며 질의응답만 진행됨

- (지원심의 기준)

심의기준 (가중치)	세부평가내용
사업 이해도 (5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문화다양성확산사업의 목적과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연구계획을 수립하였는가? - 연구목표와 연구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 -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연구 범위의 적정성 및 적합성 등
기관의 수행역량 (5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청기관은 문화다양성확산사업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가? • 사업계획과 부합하는 수행체계 마련 및 전담인력 등이 확보되어 있는가? - 전담인력의 정규직·계약직·코디네이터·파트타임 등 직군 구성 • 사업예산·수행일정·관리체계·절차 등은 적정한가? • 전체적인 운영사항을 고려해보았을 때, 사업수행에 대한 의지 정도가 확고하며 결과가 기대되는가?
100%	합계

2. 심화·확산단계

- (심의위원회)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심의위원회 구성
- (심의절차) 1차 서류심의 > 2차 프레젠테이션·인터뷰심의

구분	심의내용
1차 서류심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심의목적) 2차 인터뷰 심의대상자 선정 • (심의방법) 서류심의

구분	심의내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심의내용) 제출서류 기반으로 자격요건 및 내용 등 심의기준에 따른 평가 • (채점방식) 심의위원 개별 채점 • (선정내용) 평균 85점 이상인 기관을 2차 심의대상자로 선정 • (결과발표) 개별연락
2차 인터뷰심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심의목적) 주관기관 선정(보조금 지원규모 확정) • (심의방법) PT발표(10분) 및 인터뷰(10분) * 신청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• (심의내용) 발표 및 질의응답 내용을 포함하여 심의기준에 따른 평가 • (채점방식) 지원적격성 가/부 평가 • (선정내용) 심의위원 전원이 '가'로 평가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• (결과발표)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 홈페이지 공지

○ (지원심의 기준)

심의기준 (가중치)	세부평가내용
지역특화성 (2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계획은 지역의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는가? - 지역의 지리적·인구적·문화적·유산적 특성 등 • 지역특화에 대한 근거는 사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절하게 도출되었는가?
사업계획의 적합성 (3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계획은 문화다양성확산사업 추진목적·추진방향과 부합하는가? • 사업계획의 내용은 구체적이며, 실현가능한가? • 항목별 산출근거와 예산은 타당하게 작성되었는가? • 사업계획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우수한가?
기관의 수행역량 (3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청기관은 문화다양성확산사업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가? • 사업계획과 부합하는 수행체계가 마련되어있는가? • 사업전담인력의 구성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있는가? - 전담인력의 정규직·계약직·코디네이터·파트타임 등 직군 구성 • 전체적인 운영사항을 고려해보았을 때, 사업수행에 대한 의지 정도가 확고하며 결과가 기대되는가?
발전가능성 및 기대효과 (2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관의 중장기 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었으며, 향후 지속 발전 가능한가? (사업내용확대, 타사업·타기관과의 연계 등) • 예상되는 추진실적은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?
100%	합계

※ 기존 참여기관의 경우, 최근 3년간의 성과평가 내용이 심의위원회에 제공될 수 있음

IV. 신청방법 및 추진일정

1.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

가. (접수방법)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

※ 신청 시, 유의사항

- 이메일, 우편, 직접방문 접수 불가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방법은 사전 숙지 요망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'내정보방'에서 신청단체 정보 입력 및 담당자 등 업데이트 필수(결과발표 등 주요안내 발송예정. 업데이트 미이행으로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, 예술위에서 책임지지 않음)

나. (접수기간) 2023년 3월 2일(목) ~ 2023년 3월 15일(수) 16:00까지

다. (제출서류)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,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

- ① (필수) 지원신청서(구조화 양식 포함)(지정양식 참조) * 기관직인 날인 필수
- ② (필수) 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
- ③ (필수)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* 기관직인 날인 필수
- ④ (필수) 문화다양성확산사업 주관기관 의무사항 이행 협약서 * 기관직인 날인 필수
- ⑤ (해당하는 경우에만) 지자체와의 위·수탁계약서, 연구실적자료 등

※ 기관직인 날인 필수 서류, 미날인 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 결격 처리되므로 반드시 날인 여부 확인 및 제출

※ 파일명 작성법 : 파일명 앞 넘버링 및 주관기관명 삽입 필수

- 예) 1. 2023_문화다양성확산사업_지원신청서_한국문화예술위원회
 2. 2023_문화다양성확산사업_사업자등록증_한국문화예술위원회
 3. 2023_문화다양성확산사업_성희롱·성폭력예방등에관한서약서_한국문화예술위원회
 4. 2023_문화다양성확산사업_주관기관의무사항이행협약서_한국문화예술위원회

2. 추진절차 및 일정

○ 공모 및 심의 추진일정(예정)

공모공고 및 신청접수	>	1차 서류심의	>	1차 심의 결과발표 및 2차 심의안내	>	2차 인터뷰심의	>	최종결과발표
2023.3.2.(목) ~ 2023.3.15.(수)		2023.3월 4-5주차		2023.3월 4-5주차		2023.3월 5주차 -4월 1주차		2023.4월 2주차

○ 사업추진절차 및 일정(교육 및 네트워킹 등 연중 3회 내외 상시 운영)

주관기관 오리엔테이션	>	보조금 1차 교부	>	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운영	>	현장모니터링 진행	>	보조금 2차 교부
2023.4월 3주차		2023.4월 3주차		2023.5월		2023.5월		2023.6월~
성과평가	>	성과평가 결과발표	>	정산 및 최종 실적보고서 제출	>	2차년도 사업계획서 제출		
2023.12월 중		2024.1월		2024.2월까지		2024.2월까지		

※ 상기일정은 실제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준비단계 선정기관의 경우 보조금 일괄교부함

V. 공통 안내사항

1. 공통 안내사항

가. 신청기관은 2023-2024년도 2년을 포함한 중기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여야 함

- 2023-2024년을 포함한 중기 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여야 함(양식참조)
- 2023년도는 세부 추진계획까지, 2024년도의 계획은 요약 제출함(양식참조)

나. 연속지원 취소 및 제재사항

- 차기년도에 원활한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3년간 문화다양성확산사업 재지원 불가함

※ 지원취소여부 결정 주요 착안사항

- 주관기관 사업담당자(실무자, 책임자 모두 해당) 부재기간이 3개월 이상
- 총사업비 집행율 70% 이하 및 자부담 우선 집행원칙 등 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
- 당초 심의를 통해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대비 추진실적이 70%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
- 문화다양성주간행사, 만족도·인식개선정도조사, 문화다양성아카이브 정보등록 등 필수 협조사항 미이행
- 기타 심의위원회가 지속 사업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

다. 심의 이후, 사업계획 변경과정 없으므로 실현 가능한 내용 및 예산을 편성토록 함(단, 천재지변·사회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외)

- 심의받은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정액 교부하므로, 사업계획 수립 시 예산 편성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, 추후 불인정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 필요
- 주관기관 내부사정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시, 변경 내용에 대한 재심의 진행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

라. 문화다양성의 날 및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추진 및 캠페인 참여 협조 필수

세계 문화다양성의 날(매년 5.21), 문화다양성 주간(매년 5.21~5.27)

- 주관기관별 또는 주관기관 간 연계를 통한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추진 필수
-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 및 캠페인 참여 협조 필수
 - 홍보물 디자인, 공식홍보영상 등 게시 협조, 통합리플릿 및 백서제작 협조 등

마. 문화다양성아카이브(CDA.or.kr) 내 사업정보 등록 필수

- 사업계획서, 결과보고서, 주요행사정보 등록 필수(개인정보 등 삭제 후 등록)

바. 만족도 및 인식개선정도 조사 참여 필수

- 기관별 30건 이상의 만족도 및 인식개선정도 유효조사지 제출 필수
- 단, 준비단계 선정기관은 1년차는 제외하며, 2년차는 10건 유효조사지 제출 필수

사. 문화다양성전문인력양성 기본과정 2인 이상 이수 필수

- 주관기관 실무자 및 책임자 등 2인 이상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(www.kmooc.kr) 또는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교육사이트 (www.edu.cda.or.kr) 내 기본과정 이수 필수(담당자 변경 시, 이수 필수)

2. 사업 관련 문의처

- (한국문화예술위원회) 지역협력부 문화다양성사업팀
 - (유선) 02-739-8322, 02-739-3493
 - (이메일) shw@arko.or.kr
- ※ 내용문의만 답변 가능하며, 시스템오류 및 이용문의는 아래 시스템별 고객센터 참조
- (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) www.ncas.or.kr(상담센터 1577-8751)
- (e나라도움) www.gosims.go.kr(상담센터 1670-9595 / 02-6676-5100)